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2D INFANTRY DIVISION
ROK-US COMBINED DIVISION
BLDG 6500, UNIT #15041
APO AP 96271-5041

EAID-CG

2021 년 6 월 3 일

수 신: 하기 배부처 참조

제 목: 지휘 지침서 #8: 위법행위 혐의에 관한 처분 보류 정책

1.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위법행위 혐의에 관한 처분 보류 정책 관련 지침을 대체함. 이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
2. 목적. 미 2 보병사단 내부에서 발생한 특정 위법행위 혐의 처분에 관한 처분 권한 보류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기 위함.
3. 범위. 본 정책은 미 2 사단 고등군법회의 소집권한 관할권에 속한 혹은 미 2 사단 배속 및 예속된 전 장병에 적용됨.
4. 사단급 보류. RCM 306(a) 조항에 의거, 사단장은 고위급간부의(임관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을 포함) 위법행위 혐의를 처분할 권한을 보류한다.
 - a. 관련 예하 지휘관은 24 시간 내로 해당 고위급 간부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갖춘 위법 혐의를 이메일로(미 2 사단 법무참모 참조 추가) 사단장에게 보고할 것임.
 - b. 본 정책에 의해 보류되는 권한에는 군사법전 아래 군법회의 기소 처분; 조항 15 의거 처벌 처분; 행정적 분리 처분; 경고장 발행을 포함함.
 - c. 예하부대지휘관은 범죄수사대(CID) 영역(예: 성폭행)을 제외한 고위급간부의 위법 혐의에 관한 초기조사를 착수할 권한이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건의에 관해 승인 여부 결정권을 갖고 있음.
 - d. 예하부대지휘관은 그 외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함. 이는 성과 면담권; 예비 심리 및 조사 착수권; 임시 정직권; 육군규정 600-20 및 623-3 에 의거 인사 해임권, RCM307 에 의거 군법회의 기소권 (preferring court-martial charges), 등을 포함함.

EAID-CG

제 목: 지휘 지침서 #8: 위법행위 혐의에 관한 처분 보류 정책

e. 여단 지휘관은 권한이 보류된 사안에 대해 처분 건의서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경우 가능하다면 언제나 중대 및 대대 지휘관의 견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사건 처분 건의 및 요청서는 이메일 혹은 공문으로 미 2 사단 법무참모 참조 포함해 사단장에게 발송할 것.

5. SPCMCA 수준 보류. 추가적으로 SPCMCA 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은 위법 혐의에 관해서는 처분할 권한을 보류함: 공권집행 중 폭행 사건 (조항 128, UCMJ); 가정폭력 건 (조항 128b, UCMJ); 금지되는 교류 및 친목 (조항 134, UCMJ); 강간 및 성폭력; 아동 성폭력 및 강간; 그 외 성적 불법행위 (조항 120, 120b, 그리고 120c, UCMJ); 인종차별, 편견,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의 인지된 인종 혹은 실제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지향, 성별, 성별 인식, 장애여부 등을 바탕으로 행해진 폭력행위; 그리고 한국인 지역주민 관련 모든 범죄 행위. 위 해당 건은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가능하며 건별로 처분에 관한 건의 없이 요청될 수 있음.

6. 특정 범죄에 따른 의무적 분리 진행. 장병이 조항 120, 120b, 120c, 가정폭력을 포함한 128b, UCMJ 혹은 식별된 성희롱 조사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기초 조사의 대상이 된 모든 경우에, 해당 장병은 분리 규정에 의거 분리 진행 절차를 밟을 것임. 지휘관이 보유를 지지하는 경우, 보유 권한은 상승되어 사단장 수준인 GCMCA 수준으로 보류될 것임. 본 단락은 군법회의 재판서 모든 관련 범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장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징계절차에서 무죄로 결정된 장병, 징벌적 제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군법회의에 의해 미분리(보유)된 장병을 포함한다.

7. 예하 지휘관은 보류되지 않은 위법 행위 한에서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함. 상급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이 보류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특정한 처분이나 건의를 내리도록 지휘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음.

8. 본 지침서에 관한 연락처는 DSN 315-756-7425, 이메일 patrick.g.hoffman.mil@mail.mil 이며 담당관은 미 2 사단 법무부 법무참모 패트릭 G. 호프만 소령임.



DAVID A. LESPERANCE
Major General, USA
Commanding